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수화언어 교육과정 및 교과 포함 〉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26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수화언어 교육과정 및 교과 포함	2
※ 참고자료	
1. 한국수어 교육 추진 현황	10
2. 타 부처 의견	11
3. 유사 입법례	12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박정하의원 등 10인

나. 제 출 일 : 2025. 4. 22.

다. 회부연월일 : 2025. 4.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흡하여 교육인력 양성이나 수어 교육 및 보급이 늦어지고 있어 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수화언어를 외국어로 인정하거나 초·중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교과에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수화언어를 교과 과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수화언어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포함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의 교육 및 보급을 증진하고 양질의 수어교육인력을 양성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한국수화언어 교육과정 및 교과 포함

가. 개정안 요지

- 한국수화언어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포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1조의2(초·중등학교 한국수어 교육)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한국수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과에 한국수어를 포함하여야 한다.</u> <u>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교원의 양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다. 검토사항

- 현행법에서 한국수화언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받고 있으나, 수어 교육의 미비로 농인들이 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음.
- 이에 한국수화언어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포함하여 한국수화언어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보급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어 보임
-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우선, 현행법상 초중등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¹⁾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2 제2항²⁾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이 그 범위 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³⁾에

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①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이하생략)

2)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이하생략)

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및 변경할 시 특정 교육과정 및 교과를 법률로써 열거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한국수화언어법」에 수화언어를 교육과정 및 교과로 명시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아울러, 스웨덴⁴⁾·노르웨이⁵⁾·뉴질랜드⁶⁾ 등 수화언어를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도 언어법 등 일반법으로 수화를 언어로 규정하고, 교육법 또는 교육정책 등을 통해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이중 구조로 형성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초·중등 교육과정에 한국수화언어를 포함하고, 교재 개발 및 교육인력 양성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인 농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Skollagen」(교육법)제7조에서 수화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수화를 통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구체적인 과목으로서의 교육과정은 Läroplan (국가 교육과정)으로 정하고 있음.

5) 「Opplæringslova」(교육법)제2조 및 제9조에서 수화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수화를 통한 초·중 및 하급 중등교육(primary and lower secondary instruction)과 고등 중등 교육(upper secondary instruction)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구체적인 과목으로서의 교육 과정은 Læreplanverk(국가 교육과정)으로 정하고 있음.

6) 「Education and Training Act 2020」 제34조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권리로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구체적인 과목으로서의 교육과정은 New Zealand Curriculum (NZC)으로 정하고 있음.

지에 동의하나,

- 교육과정에 한국수화언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⁷⁾,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⁸⁾ 등 법령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에 수어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임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임.

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 등) ①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해야 한다.

②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1. 교육부장관이 새로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시·도 교육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20만명 이상인 경우

③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청 등이 있는 날(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국민의견 게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의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 일정·내용 및 적용 대상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⑤국가교육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제18조제1항제2호의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아울러 안 제2항에 대해서 한국수어 교육을 위한 교원의 양성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⁹⁾ 및 제21조제2항¹⁰⁾에 따른 ‘교원’ 양성의 필요성,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제2항¹¹⁾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제도와 중복 등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이 아닌 ‘한국수어교원’ 등을 포괄하는 ‘전문인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임.

9)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①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이하생략)

11)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이하생략)

현행	개정안	문체부 수정의견
<신설>	제11조의2(초·중등학교 한국수어 교육)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한국수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과에 한국수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초·중등학교 한국수어 교육)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한국수어 교육이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교원의 양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교육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양질의 수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개정안에 공감하는바, 「초·중등교육법」 제23조¹²⁾에 따라 마련된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에 이미 수어 관련 내용을 보다 확대·반영한 바 있으며, 기존 비교과 활동이었던 ‘농인의 생활과 문화’를 교과목으로 상향하여 관련 교육내용을 보다 체계화하고, 특수교육 공

12)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교육과정에 수어(초·중·고)를 신설하는 등 수어 관련 교육과정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 개정안과 같이 법률로 특정 교육내용을 필수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정하도록 한 법령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수어교육의 중요성 및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조항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학교교육에 관련된 사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및 시·도 교육청 등의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현행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 수정의견
<신설>	제11조의2(초·중등학교 한국수어 교육)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한국수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과에 한국수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초·중등학교 한국수어 교육)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한국수어 교육이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	② (생략)	② (생략)

○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신설 교과에 따른 교원 양성은 교육과정·교과 등의 개편 및 관련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한국수어교원 제도와 일부 중복되어 법체계상 상충될 가능성

이 우려되며,

- 한국수어 교원과 교원의 역할이 중복될 수 있어, 교원 양성기관의 반발 등이 있을 것 우려가 예측되고,
- 한국수어 교육을 위한 교원의 양성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원’ 양성의 필요성, 현재 운영 중인 제도와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안 제11조의2제2항의 ‘교원의 양성’을 ‘전문인력의 양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교육부 수정의견
<신설>	제11조의2(초·중등학교 한국수어 교육) ① (생략)	제11조의2(초·중등학교 한국수어 교육) ① (생략)
<신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교원의 양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문의처

02)6788-5380

참고1

한국수어 교육 추진 현황

부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문체부 (국립국어원)
대상	청각장애학생	청각장애인 및 비장애인
목적	학령기 청각장애학생 교육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소관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한국수화언어법
추진 내용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 '국어' 교과 수어 관련 내용 포함 - '수어(초·중·고)': 공통교육과정(창의적체험활동(비교과)) 신설 - '농인의 생활과 문화(초·중)': 공통교육과정(창의적체험활동(비교과)) - '농인의 생활과 문화(고)': 전문 교과 직업·생활(선택교과)) ※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교원 연수) -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의 수어 지도 역량강화 연수 과정 운영 및 한국수화언어능력 평가 인증 제도 운영	(교재 개발) 총 9종 ·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재 4종 · 청각장애 아동 대상 교재 1종 · 청인(농인가족 등) 대상 교재 2종 · 한국수어교원 실무교육 교재 2종 (교원 양성) 한국수어교원 양성 ·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취득자 635명('25년 5월 기준 누적) (교육기관 지정·지원) · 한국수어교육원 8개소 지정·지원('25년 5월 기준)

참고2

타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 (‘25. 5. 9.)	(수정 수용) -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양질의 수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개정안에 공감함. - 다만, 본 법률개정안과 같이 법률로 특정 교육내용을 필수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을 정하도록 한 법령*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 등) - 수어 교육의 중요성 및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조항의 일부 수정 필요 ※ 해당 개정안은 학교교육에 관련된 사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및 시도·교육청 등의 사전검토가 필요함.
교육부 (‘25. 5. 14.)	(신중 검토) - 신설 교과에 따른 교원 양성은 교육과정·교과 등의 개편 및 관련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한국수화언어법」제14조에서 규정한 한국수어교원 제도와 일부 중복되어 법 체계상 미부합하며 한국수어교원 교원과 역할 중복, 교원 양성기관 반발 등 우려 - 한국수어 교육을 위한 교원의 양성은 「초·중등교육법」제19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원’ 양성의 필요성, 현재 운영 중인 제도와 중복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 필요

참고3**유사 입법례**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경제교육지원법 (제15283호)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②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840호)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